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8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1월 26일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경제기획국장 김 용 학

나. 제안이유

- '87년 건축된 근로자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과다발생과 입주율 저조
- 구미시와 LH공사의 '19. 6. 27 MOU협약으로 재건축 비용 없이 행복주택(공공임대)으로 재건축
-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과 관련 구미시와 LH공사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개요)
- 제4조 : 업무의 분담
 - 구미시 : 사업부지 제공, 관련부서 협의 등 인허가 지원, 기존 거주자 퇴거 및 신규 입주자선정 지원
 - LH공사 : 주택의 건립(설계, 시공, 감리), 하자담보 및 사용승인 검사, 사업관련 인허가 신청 및 추진, 주택의 운영·관리 등
- 제5조 : 부지의 무상사용 기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
- 제6조 : 사업비 분담 및 지원사항
 - 구미시 : 사업부지의 무상 제공, 기존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부담
 - LH공사 : 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 제7조 : 건축물의 소유·관리
- 제8조 ~ 제9조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기관의 의무
- 제10조 ~ 제12조 : 협약의 변경, 협약의 효력, 경과조치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11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정

○ 본 「행복주택 구미송정지구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 동의안」 은,

- 송정동 62번지 일원 근로자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총 200세대 중 현재 18세대만 거주하는 등 입주율이 저조함에 따라, 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행복주택(공공임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약서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기존 근로자임대아파트 철거공사비 10억과 이주보상비 1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건축 비용 없이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